

---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

2022. 1. 24.

양형위원회

---

##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 배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상당함
    -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2021. 6. 기준 1,500여 건으로,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컸던 2020년 양형위원회 전체 접수 의견보다 많은 수준)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함.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여부, 유형의 재분류 여부,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여부, 양형인자의 정비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 2021. 6. 21.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함. 양형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을 요청

**[보건복지부]**

- 전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내용의 양형기준 마련, 즉 별도의 범죄군 분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따른 공통 양형인자 마련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개선(가중인자 추가, 감경인자 삭제, 권고형의 상향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필요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일반의 개별 양형인자에서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특수성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반영 필요

**■ 수정 경과**

- 2021. 6. 7. 제11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 2021. 12. 6. 제113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심의
- 2022. 1. 24. 제114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심의 및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22. 1. ~ 2022.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2022. 2. 25.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2.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 II. 아동학대범죄 개관

###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현황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제6조, 제7조 적용대상 여부	대표죄명 법정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 257조(상해) 제1항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7년 ↓
	나목	형법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 271조(유기) 제1항의 죄 등	○	○	3년 ↓
	다목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의 죄 등	○	○	5년 ↓
	라목	형법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3년 ↓
	마목	형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등	○	○	10년 ↓
	바목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조(강간)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3년 ↑
	사목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등	○	×	5년 ↓
	아목	형법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	3년 ↓
	자목	형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의 죄 등	○	○	5년 ↓
	차목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 350조(공갈)의 죄 등	○	○(제6조 단서), ×(제7조)	10년 ↓
	카목	형법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 손괴등)의 죄	○	×	3년 ↓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2호만)	○	5년 ↓
	파목	가목부터 타 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 또는 ×	
	하목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살해 제외)	○ (아동학대살해 제외)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구성되는데, 그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제71조 제1항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됨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 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제4호(유해곡예)는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 3. 16. 신설됨

##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 개정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4조(아동학대치사) <신 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양형자료조사 결과

#### ▣ 2011년~2020년 선고 사건 건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세부죄명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	1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37	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15	15
	<b>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b>	<b>8</b>	<b>234</b>	<b>242</b>
	<b>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b>	<b>16</b>	<b>216</b>	<b>232</b>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방조	-	1	1
	<b>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b>	<b>10</b>	<b>692</b>	<b>702</b>
	<b>소계</b>	<b>36</b>	<b>1,198</b>	<b>1,234</b>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	-	2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치상)	1	-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2	7	9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영아유기)	-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	2	1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	2	2
	<b>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b>	<b>5</b>	<b>276</b>	<b>281</b>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1	-	11
	<b>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b>	<b>59</b>	<b>-</b>	<b>59</b>
<b>소계</b>	<b>80</b>	<b>289</b>	<b>369</b>	
형법	<b>영아유기</b>	<b>-</b>	<b>73</b>	<b>73</b>
	영아유기치사	16	-	16
	유기	-	7	7
	유기치사	7	1	8
	학대	-	1	1
	학대치사	4	-	4
	학대치상	-	1	1
	<b>소계</b>	<b>27</b>	<b>83</b>	<b>110</b>
<b>전체</b>	<b>143</b>	<b>1,570</b>	<b>1,713</b>	

▣ 양형기준 구분에 따른 연도별 대상사건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수	14	10	8	10	7	17	8	7	4	8	93
		비율	15.1	10.8	8.6	10.8	7.5	18.3	8.6	7.5	4.3	8.6	100.0
	제2유형	수	11	11	33	51	103	184	273	264	298	275	1,503
		비율	0.7	0.7	2.2	3.4	6.9	12.2	18.2	17.6	19.8	18.3	100.0
	소계	수	25	21	41	61	110	201	281	271	302	283	1,596
		비율	1.6	1.3	2.6	3.8	6.9	12.6	17.6	17.0	18.9	17.7	100.0
유기·학대(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	-	-	1	-	-	-	-	-	-	1	
	비율	-	-	-	100.0	-	-	-	-	-	-	100.0	
유기·학대(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1	3	7	3	4	1	-	3	4	2	28	
	비율	3.6	10.7	25.0	10.7	14.3	3.6	-	10.7	14.3	7.1	100.0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	제1유형	수	-	-	-	-	-	2	3	2	1	3	11
		비율	-	-	-	-	-	18.2	27.3	18.2	9.1	27.3	100.0
	제2유형	수	-	-	-	-	-	9	14	3	14	19	59
		비율	-	-	-	-	-	15.3	23.7	5.1	23.7	32.2	100.0
	소계	수	-	-	-	-	-	11	17	5	15	22	70
		비율	-	-	-	-	-	15.7	24.3	7.1	21.4	31.4	10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감금)	수	-	-	-	-	-	-	3	-	-	-	3	
	비율	-	-	-	-	-	-	100.0	-	-	-	100.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매매)	수	-	-	-	3	1	6	4	-	1	-	15	
	비율	-	-	-	20.0	6.7	40.0	26.7	-	6.7	-	100.0	
전체	수	26	24	48	68	115	219	305	279	322	307	1,713	
	비율	1.5	1.4	2.8	4.0	6.7	12.8	17.8	16.3	18.8	17.9	100.0	

(이하 여백)

---

### Ⅲ.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 1.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하여 추가로 포함할 범죄

##### 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징역 5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징역 7년↑)가 신설됨
- 아동학대범죄 중에서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그 처벌에 대한 관심이 큰 사안임

##### 나.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카목(재물손괴)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가 적용됨에도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상해 등), 라목(협박 등), 바목(강간 등), 차목(공갈 등)의 경우, 형법 등에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상해 등), 라목(협박 등), 바목(강간 등),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차목(공갈 등), 카목(재물손괴)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가 적용됨에도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

---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7조가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위 제6조, 제7조가 포함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함
- 예컨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위 범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한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가 권고됨

#### 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 아동매매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법정형(징역 10년↓)에 비추어 가벌성의 정도도 큼
- 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정형(징역 10년↓, 벌금 1억 원↓)에 비추어 가벌성의 정도도 큼

## 2.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할 범죄



---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유해곡예)

- 1960년대 중후반까지 대중오락으로 존재하였던 곡예단에서 아동의 신체를 혹사시키는 곡예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사회 변화와 함께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이고, 법정형(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도 낮은 편임

## 나.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 영아유기 후 살해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처벌법 해석상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하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도입된 이상 영아살해죄의 성립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영아살해죄는 그 대상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대 범죄에서 필요한 학대 경향 내지 지속성(반복성)이 있기 힘들. 또한 영아살해의 동기 역시 치욕 은폐, 양육 불가 예상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필요하므로, 학대와는 반대 방향의 동기가 있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는 어울리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규정에도 나열되지 않았음
- 살인범죄의 가중요건인 존속살인도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음. 이와 균형상 살인범죄의 감경요건인 영아살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다면 역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함

(이하 여백)

---

## IV.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 2.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은 신설하지 않음

#### ▣ 현황 및 근거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다양한 범죄들을 기본범죄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위 범죄군에 속한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들을 기본범죄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위 각 양형기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를 특별가중인자로도 반영하고 있음

- 
-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은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법정형 등이 서로 상이함
  -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할 경우, 위 기본범죄들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및 유형분류의 수만큼 범죄유형이 파생되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을 택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지는 않음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고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다양하므로 각 행위태양별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서 양형인자 추가 등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실제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는 그와 같이 대응하여 왔음
  -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
-

---

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반영함

### 3.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는 별도 대 유형으로 분류함

#### ■ 방향 및 근거

- 현행 ‘유기·학대’ 대유형의 하위 범주에 있는 아동학대범죄 유형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대유형으로 옮겨 분류함
-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사안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등의 경우 형법상 유기·학대로 처벌되기보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되고 있음. 형법상 유기·학대에 비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법정형이 더 높으므로(형법상 유기 3년↓, 학대 2년↓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10년↓,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5년↓), 이를 유형 분류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 있음
-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새로 포함한다면, 행위태양과 법정형의 차이,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필요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와 함께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형 분류 변경

● 대유형 분류 변경(강조 표시 변경 부분)

현행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01. 체포·감금 02. 유기·학대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	(변경 없음) (변경 없음) <b>03. 아동학대</b>

● 대유형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중유형, 소유형 분류 변경(강조 표시 변경 부분)

현행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수정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
(중유형 없음)	<b>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b>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성적 학대 3. 매매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b>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b>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b>3. 아동학대살해</b>

---

## 4. 아동학대살해 범죄를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아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아동학대’ 대유형에 분류

### ■ 근거

- 아동학대살해를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방안으로는, ① ‘아동학대살해범인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 ②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포섭하는 방안, ③ ‘아동학대살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①방안의 경우, 아동학대살해와 법정형이 동일한 존속살해(사형, 무기, 징역 7년↑)와 같이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학대살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가중인자를 적절히 설정하는 방식으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상 법정형 등의 기준에 부합하나, 아동학대살해의 경우 결합범 형태로서 피해자만 존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존속살해와는 성격이 다르고, 아동학대살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②방안의 경우, 아동학대살해가 강간살인 등과 같은 결합범 형태이고 아동학대살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나, 같은 유형의 강간살인 등과는 법정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강간살인 등: 사형, 무기), 기본범죄의 성격도 차이가 있는 점(강간살인 등의 기본범죄인 강간 등은 특정강력범죄) 등에 비추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③방안의 경우, 위 ①, ②방안의 각 단점을 피하면서 아동학대살해의

---

법정형과 양형실무,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형량범위를 권고할 수 있게 하나, 기본적으로 동기를 기준으로 하되 흉악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별개 유형으로 분류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즉, 고의 살인 범죄도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 결론

-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와 법정형, 범죄의 성격과 특수성, 아동학대범죄의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와 함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동학대살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절함

## 5. 유형 분류 정리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01<sup>1</sup> 체포·감금 (변동 없음)

---

---

## 02<sup>1</sup> 유기·학대 (변동 없음)

---

## 03<sup>1</sup> 아동학대

---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성적 학대			
3	매매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유형의 정의]

## 01<sup>1</sup> 체포·감금 (변동 없음)

---

## 02<sup>1</sup> 유기·학대

---

※ ‘가.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를 삭제하는 외에는 변동 없음



## 03<sup>1</sup>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 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결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72조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추가]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추가가 필요한 범죄군은, 각 양형기준에 맞게 아래 내용을 '유형의 정의'에 추가함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 내지 제○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p>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목, ○목, 과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p>	<p>아동학대처벌법 제6조</p>
<p>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목, ○목, 과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p>	<p>아동학대처벌법 제7조</p>

(이하 여백)

---

## V.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 1.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 ▣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 2. 중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의 권고 형량범위

#### 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1) 현행 양형기준과 형량 분포

#### ▣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 중한 유기·학대는 대부분 법정형 5년 이하 범죄이나, 보다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2018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법정형 7년 이하인 ‘일반상해’를 기초로 하되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하한을 상향함
- 중한 유기·학대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사건 수는 25건, 평균형량은 11.5월, 형량분포는 징역 6월(32.0%), 1년(24.0%) 등의 순이었음(2년, 3년도 각 2건 있었음)

■ **형량분포**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sup>1)</sup>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2호, 제17조 3호(또는 5호)	수	4	3	101	4	342	190	1	98	180	14	1	4	41	15	4	3	1	1	1,007	8.81
	비율	0.4	0.3	10.0	0.4	34.0	18.9	0.1	9.7	17.9	1.4	0.1	0.4	4.1	1.5	0.4	0.3	0.1	0.1	100.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2호, 제17조 6호	수	2	2	25	-	97	44	-	17	31	1	-	1	6	5	4	5	-	-	240	8.93
	비율	0.8	0.8	10.4	-	40.4	18.3	-	7.1	12.9	0.4	-	0.4	2.5	2.1	1.7	2.1	-	-	100.0	
전체	수	6	5	126	4	439	234	1	115	211	15	1	5	47	20	8	8	1	1	1,247	8.83
	비율	0.5	0.4	10.1	0.3	35.2	18.7	0.1	9.2	16.9	1.2	0.1	0.4	3.7	1.6	0.6	0.6	0.1	0.1	100.0	

- 영역별 형량분포(2014. 10. 1. ~ 2019. 12. 31.)<sup>2)</sup>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36	42				48	60
감경	수	1	3	53	1	87	45	1	21	21	0	0	0	4	0	0	1	1	0	0	0	239	7.2	21.9
	비율	0.4	1.3	22.2	0.4	36.4	18.8	0.4	8.8	8.8	0.0	0.0	0.0	1.7	0.0	0.0	0.4	0.4	0.0	0.0	0.0	100.0		
기본	수	1	0	34	1	239	137	0	79	125	7	1	1	18	0	14	2	3	0	2	0	664	9.1	60.8
	비율	0.2	0.0	5.1	0.2	36.0	20.6	0.0	11.9	18.8	1.1	0.2	0.2	2.7	0.0	2.1	0.3	0.5	0.0	0.3	0.0	100.0		
가중	수	0	0	5	0	19	22	0	13	60	4	0	3	25	1	16	7	10	1	2	2	190	15.5	17.4
	비율	0.0	0.0	2.6	0.0	10.0	11.6	0.0	6.8	31.6	2.1	0.0	1.6	13.2	0.5	8.4	3.7	5.3	0.5	1.1	1.1	100.0		

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 분석’ 참조, 이하 같음

2)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김세중)’ 참조, 이하 같음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36	42	48				60
전체	수	2	3	92	2	345	204	1	113	206	11	1	4	47	1	30	10	14	1	4	2	1093	9.8	100.0
	비율	0.2	0.3	8.4	0.2	31.6	18.7	0.1	10.3	18.8	1.0	0.1	0.4	4.3	0.1	2.7	0.9	1.3	0.1	0.4	0.2	100.0		

- 평균형량은 8.83월임<sup>3)</sup>
- 형량분포는 징역 6월(35.2%), 8월(18.7%), 12월(16.9%) 등의 순이고, 징역 1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91.4%)이 높음
- 기본 영역의 분포 비율(60.8%)이 높음

## 2) 권고 형량범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행 양형기준 중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u>1년2월 - 3년6월</u>

- 평균 형량과 양형실무
  - 평균형량은 8.83월로서 기본 영역(6월-1년6월)의 범위 내에 있고, 양형실무가 대체로 각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
- 감경 영역, 기본 영역
  - 현행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배경, 형량분포의 내용에 더하여 ‘신체

3) 평균형량, 형량분포에 대한 분석은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를, 각 영역의 분포 비율, 형량분포에 대한 분석은 ‘영역별 형량분포(2014. 10. 1. ~ 2019. 12. 31.)’를 기초로 함, 이하 같음

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의 경우 행위 유형과 경위, 아동의 성장 환경 등에 비추어 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현행을 유지함

● 가중 영역

- 가중 영역의 하한은 비록 하한인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59건(31.0%) 발견되나, 하한이 감경 영역의 상한과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2월로 상향함
- 가중 영역의 상한은 2년 초과인 형이 선고된 사건이 22건(11.7%) 발견되는 점, ‘일반상해’ 가중 영역의 상한이 상향(2년 → 2년6월)된 점,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들(상해, 교통사고 치사상 등)의 가중 영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반영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게 됨

나. 매매, 성적 학대

1) 매매와 성적 학대의 권고 형량범위 분리 설정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

적용법조	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수						3		7	3					1		1			15	12.67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1호, 제17조 1호	비율						20.0		46.7	20.0					6.7		6.7			100.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의2호, 제17조 2호	수	-	1	14	-	69	45	-	29	60	2	-	1	19	7	2	2	1	-	252	10.23
	비율	-	0.4	5.6	-	27.4	17.9	-	11.5	23.8	0.8	-	0.4	7.5	2.8	0.8	0.8	0.4	-	100.0	

- 매매: 15건, 평균형량 12.67월, 최빈값 10월
- 성적 학대: 252건, 평균형량 10.23월, 최빈값 6월

### ■ 분리 설정함

- 매매와 성적 학대 사이의 평균형량 차이가 2.44월이고, 매매의 경우 선고형량의 최빈값이 10월, 그 하한과 상한이 8월~36월인데, 성적 학대의 경우 선고형량의 최빈값이 6월, 그 하한과 상한이 3월~48월임
- 징역형의 형량(10년 이하 징역)이 동일하고 매매의 경우 선고건수가 적기는 하나, 매매와 성적 학대 사이에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뿐만 아니라 형량분포의 내용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달리 정함

## 2) 성적 학대의 권고 형량범위

###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의2호, 제17조 2호	수	-	1	14	-	69	45	-	29	60	2	-	1	19	7	2	2	1	-	252	10.23
	비율	-	0.4	5.6	-	27.4	17.9	-	11.5	23.8	0.8	-	0.4	7.5	2.8	0.8	0.8	0.4	-	100.0	

- 평균형량은 10.23월임
- 형량분포는 징역 6월(27.4%), 12월(23.8%), 8월(17.9%) 등의 순이고,



징역 1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86.6%)이 높음

▣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의제강제추행(13세미만)	10년 ↓, 1,500만 원 ↓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13세미만)	3년 ↑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일반강제추행(13세이상)	10년 ↓, 1,500만 원 ↓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9세미만)	1~10년, 2,000~5,000만 원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 되도록 유인·권유 등(19세미만)	7년 ↓, 5,000만 원 ↓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 되도록 강요 등(19세미만)	5년 ↑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 권고 형량범위

[성적 학대(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 설정 근거

- 성적 학대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의제강제추행(13세미만)’ 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9세미만)’ 사이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함이 체계상 합당함
- 성적 학대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선고사례를 보면

---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행위태양도 언어적 학대부터 성적 접촉에 이르는 경우까지 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되, ① 감경 영역의 하한은 형량분포의 내용[4월 14건(5.6%)] 등을 감안하여 4월로 정하고, ② 기본 영역의 하한은, 형량분포상 6월 선고사건이 가장 많고(27.4%), 8월 선고사건도 많은 편(17.9%)인데, 6월 선고사건에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규범적 조정을 통해 8월로 정하며, ③ 가중 영역의 하한은 규범적 조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9세 미만)’ 와 같이 2년으로 정함

- 성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보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범죄나 성매매범죄에서의 추행, 간음 또는 강요보다는 넓은 개념인 점, 선고사례를 보면 추행,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 등에 이르는 사안도 있는바, 성적 학대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성범죄나 성매매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상한은 규범적 조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9세 미만)’ 와 같이 정함
- 비록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이나, 가중 구간의 상한(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죄질의 행위유형(가령, 강간)에 대하여는 실무상 해당 구성요건(강간죄)으로 기소되므로 이 부분 형량범위에 굳이 이를 반영할 필요는 없음

### 3) 매매의 권고 형량범위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8	60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 제17조 1호	수						3		7	3					1		1			15	12.67
	비율						20.0		46.7	20.0					6.7		6.7			100.0	

- 평균형량은 12.67월임
- 형량분포는 징역 10월(46.7%), 8월과 12월(각 20.0%) 등 순임

▣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0년↓ or 7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1~10년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2~15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 권고 형량범위

[매매(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 설정 근거
  - 아동매매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 선고건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약취·유인’ 과 ‘목적범인 인신매매’ 사이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체계상 합당함
  - 아동매매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선고사례 중 매도

인 측의 범행동기 등 사정을 보면 영아유기(~8월 / 2월~1년 / 6월~1년6월)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①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의 하한은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과 같이 정하고, ② 가중 영역의 하한은 규범적 조정을 통해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와 같이 정함

- 선고사례 중 매수인 측의 범행동기 등을 보면 입양이 대부분이나 영리 목적 앞선인 경우도 있는 점, 아동매매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목적범인 인신매매와 그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①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의 상한은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와 같이 정하고, ② 가중 영역의 상한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과 같이 정함
- 비록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으로 성적 학대와 동일하나, 성적 학대와 달리 벌금형이 없으므로 성적 학대의 형량범위 보다 상향하여 설정함

### 3. 중유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권고 형량범위

#### 가. 아동학대중상해

##### 1) 현행 양형기준과 형량 분포

###### ▣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의 중대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일반강간(13세 이상)’ 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6. 12. 31.까지 아동학대중상해로 처벌된 사례 4건 중 1건이 96월로 가중 영역의 상한(84월)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 법정형이 동일한 ‘상해치사’ 에 대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이 8년으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양형기준 수정 당시 가중 영역의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 **형량분포**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18	24	30	36	72	9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중상해)	수	1	3	1	4	1	1	11	39.27
	비율	9.1	27.3	9.1	36.4	9.1	9.1	100.0	

- 영역별 형량분포(2014. 10. 1. ~ 2019. 12. 31.)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4	30	36	42	48	60	72	84	96	120			
감경	수	3	0	0	0	0	0	0	0	0	0	3	24.0	27.3
	비율	100	0	0	0	0	0	0	0	0	0	100		
기본	수	0	2	3	0	0	0	0	0	0	0	5	33.6	45.4
	비율	0	40	60	0	0	0	0	0	0	0	100		
가중	수	0	0	0	0	0	0	2	0	1	0	3	80.0	27.3
	비율	0	0	0	0	0	0	66.7	0	33.3	0	100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4	30	36	42	48	60	72	84	96	120			
전체	수	3	2	3	0	0	0	2	0	1	0	11	43.6	100.0
	비율	27.3	18.2	27.3	0	0	0	18.2	0	9.1	0	100		

- 평균형량은 39.27월임
- 형량분포는 징역 3년(36.4%), 2년(27.3%) 등의 순임
- 기본 영역의 분포 비율(45.4%)이 높음

## 2) 권고 형량범위

[아동학대중상해(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중상해 [현행 양형기준 유지]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 ● 설정 근거

-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평균형량은 39.27월로서 기본 영역(2년6월-5년)의 범위 내에 있고, 선고사건 모두 각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
- 선고 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기보다는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바, 현행을 유지함

## 나. 아동학대치사

### 1) 현행 양형기준과 형량 분포

■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일반강간(13세 이상 상해/치상)’ 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7. 12. 31.까지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된 사례 29건 중 4건이 가중 영역의 상한(108개월)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2018년 양형기준 수정 시 가중 영역의 상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함

■ **형량분포**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2011. 1. 1. ~ 2020. 12. 31.)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4	30	36	42	48	60	72	84	96	102	120	144	1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치사)	수	1	7	10	1	4	5	7	7	4	1	4	3	5	59	76.58	
	비율	1.7	11.9	16.9	1.7	6.8	8.5	11.9	11.9	6.8	1.7	6.8	5.1	8.5	100.0		

- 영역별 형량분포(2014. 10. 1. ~ 2019. 12. 31.)

영역		징역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4	30	36	42	48	60	72	84	96	102	120	144	180	204	240			
감경	수	1	5	7	3	3	0	0	0	0	0	0	0	0	0	0	19	36.6	33.9
	비율	5.3	26.3	36.8	15.8	15.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0	1	0	1	2	2	0	0	0	0	0	0	0	0	6	58.0	10.7
	비율	0.0	0.0	16.7	0.0	16.7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영역		징역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분포
		24	30	36	42	48	60	72	84	96	102	120	144	180	204	240			
가중	수	0	0	0	0	0	1	4	4	5	1	4	3	5	1	3	31	129.1	55.4
	비율	0.0	0.0	0.0	0.0	0.0	3.2	12.9	12.9	16.1	3.2	12.9	9.7	16.1	3.2	9.7	100.0		
전체	수	1	5	8	3	4	3	6	4	5	1	4	3	5	1	3	56	90.1	100.0
	비율	1.8	8.9	14.3	5.4	7.1	5.4	10.7	7.1	8.9	1.8	7.1	5.4	8.9	1.8	5.4	100		

- 평균형량은 76.58월임
- 형량분포는 징역 3년(16.9%), 2년6월, 6년, 7년(각 11.9%) 등의 순임
- 가중 영역의 분포 비율(55.4%)이 높고, 이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 이상 선고된 사건이 61.2%를 차지함

## 2) 권고 형량범위

[아동학대치사(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행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양형기준 수정안	2년6월 - 5년	4년 - <u>8년</u>	<u>7년 - 15년</u>

### ● 가중 영역

- 적용법조별 형량분포를 살펴보면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5건(전체 사건 대비 8.5%)에 이르고, 영역별 형량분포를 살펴보다더라도 징역 13년 5건, 징역 17년 1건, 징역 20년 선고 3건이 확인됨
- 형법상 살인죄와 비교하여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형이 동일하고,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 있어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 ‘살인’으로 기소되지 못하더라



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함. 가중 영역의 상한을 12년이 아닌 15년으로 상향

- 영역별 형량분포상 가중 영역의 상한 10년을 넘는 사건이 12건 발견되는 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가벌성,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 및 체계상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가중 영역의 하한은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 영역 하한인 7년으로 상향

● 감경 영역, 기본 영역

- 양형기준 설정 당시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변경이 없는 점,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현행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판결이 선고된 점(오히려 하한을 이탈한 선고사례가 있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 및 체계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의 하한과 상한, 기본 영역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함

※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자 등 치사	무기, 5년 ↑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기본 영역의 상한은, 가중 영역과의 중첩 구간을 두기 위하여(가중 영역의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였으므로) 8년으로 상향

## 다. 아동학대살해

### ▣ 살인(아동복지법위반 경합) 형량분포(2011. 1. 1. ~ 2019. 12. 31.)

세부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월)	
		24	30	48	60	84	96	120	144	180	240	288	300			360
살인	수	0	0	1	0	1	1	1	0	4	8	1	2	1	20	211.8
	비율	0.0	0.0	5.0	0.0	5.0	5.0	5.0	0.0	20.0	40.0	5.0	10.0	5.0	100.0	

- 평균형량은 211.8월(17년 7.8월)임
- 형량분포는 징역 20년(40.0%), 15년(20.0%) 등의 순이고, 무기도 1건 있음
- 2020년~2021년 9월까지 선고사건 11건 형량분포
- 12년(2건), 17년(1건, 항소심 10년), 20년(1건), 22년(2건, 항소심 25년), 25년(1건), 30년(1건), 무기(1건)

### ▣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 살인범죄 양형기준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방화범죄 양형기준(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등	사형, 무기, 7년↑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고의 없음)		4년 - 9년	7년 - 13년	10년 - 17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고의 있음) <sup>4)</sup>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권고 형량범위

[아동학대살해(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설정 근거

-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 종래 살인(아동복지법위반 경합) 사안에 대한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난 동기 살인’ 과 ‘중대범죄 결합 살인’ 사이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체계상 합당함
- 아동학대살해에 해당하는 종래 살인(아동복지법위반 경합) 사안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가중인자)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보통 동기 살인’ 의 ‘가중 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에서 시작함

4)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는 서술식 기준 있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 ‘기본 영역’ 이 권고되는 경우, 징역 10년, 12년, 15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처벌불원’ 등이 추가로 인정되어 ‘감경 영역’ 이 권고되는 경우, 징역 7년, 8년, 1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 한편 ‘미필적 살인의 고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등 특별가중인자도 인정되어 ‘가중 영역’ 또는 ‘특별가중 영역’ 이 권고되는 경우, 징역 15년, 17년, 20년, 22년, 24년, 25년, 30년 또는 무기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살해가 신설된 현재, 종래 ‘기본 영역’ 이 권고된 사례는 ‘감경 영역’, ‘가중 영역’ 은 ‘기본 영역’, ‘특별가중 영역’ 은 ‘가중 영역’ 에 대응함
- 종래 살인(아동복지법위반 경합) 사안에 대한 형량분포의 내용을 보면, 징역 20년은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에서 중첩되고, 징역 15년은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에서 중첩됨
-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동기 살인’ 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함
-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서술식 기준을 둬

#### 4. 권고 형량범위 정리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03<sup>1</sup>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등을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외에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하지 않음

(이하 여백)

## V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가. 중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양형인자

##### 1) 검토 방향과 통계 등

###### ▣ 검토 방향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내용 등에 비추어 현행 유기·학대범죄(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를 토대로 함
-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내용,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함

######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 일반 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인자
전체	5 33.3%	5 33.3%	1 6.7%	2 13.3%	1 6.7%	6 40.0%	10 66.7%

- 20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15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6.7%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40.0% = 가중영역 40.0% > 감경영역 20.0%

- 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가담 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 대의 정도가 경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전체	300	5	5	26	47	9	4	204
	46.4%	0.8%	0.8%	4.0%	7.3%	1.4%	0.6%	31.5%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유기·학 대의 정도가 중	동종 누범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	상습범	특별가 중인자
전체	8	68	51	7	177	36	347
	1.2%	10.5%	7.9%	1.1%	27.4%	5.6%	53.6%

- 1,093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647번인데,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53.6%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60.8% > 감경영역 21.8% > 가중영역 17.4%

#### ▣ 아동학대범죄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수정 사항 반영

- 이번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매매 등을 추가함
-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양형실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함

## 2) 양형인자 요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구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b>(1, 2유형)</b></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b>(1, 2유형)</b></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b>(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b></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b>아동학대처벌법 제6조</b>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일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b>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b></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b>한 범행</b>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b>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b>)</li> <li>●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양형인자 상세 설명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중한 경우

- 성적 학대가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된 점, 성적 학대 구성요건의 개념 범위 및 가별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의 예시에 성적 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함<sup>5)</sup>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에서 **파란색** 부분 추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파출소·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에서 **파란색** 부분 추가, **붉은색 및 삭제** 부분 삭제(이하 같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 내용(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을 참고함

- 유기: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협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양형인자의 위상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응되는 인자로서, 그 균형상 특별감경인자로 둬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아예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별하여, 그 동기를 크게 반영하고 있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에게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로 동기 요소를 특별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의 삭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의규정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함(아동학대 범죄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주의적으

---

로라도 이를 규정함)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혼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형법 제11조가 2020. 12. 8. 개정되었고(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위 개정 이후 신설 또는 수정된 범죄군(주거침입범죄 등)에서도 위 개정 내용을 반영

#### ■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 유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학대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 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는 형법상 유기·학대, 살인 등의 가중적 처벌규정으로 그 보호법익, 범죄의 성질,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 포함된 범죄들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1범죄군)에 해당함

※ 2021. 8. 17. 제11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대유형 1(체포·감금), 2(유기·학대)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함
- 다만 대유형 3(아동학대)의 경우 유사한 형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양형정책적 차원에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1-2 범죄군)에 해당함

● 질적 구분

---

-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족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나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된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 2018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유지된 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아동학대범죄에서 유독 그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의사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도 엄격한 양형조사, 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정의 규정 불필요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의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 진지한 반성

- 양형인자의 남용 등에 우려, 현행 양형기준상 위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현황과 내용<sup>6)</sup> 등을 고려하여,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6)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에서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경인 자로서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양형인자 정의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양형인자 정의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누범 및 전과에서 ‘동종’의 범위

● 성적 학대(2유형) 구성요건의 유형(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함

● 양형인자 표현

- 특별양형인자 중 ‘동종 누범’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중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아동복지법 제72조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아동학대 처벌법 제6조(상습범)는 적용되지 아니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과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2018년 양형기준 수정 시 대유형 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일반가중인자로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

- 아동학대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폭력 성행의 발현이라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력범죄, 성범죄 등과 같이 서술식 기준을 둠

- 서술식 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나. 중유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양형인자

### 1) 검토 방향과 통계 등

#### ▣ 검토 방향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내용 등에 비추어 현행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의 양형인자를 토대로 함
-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내용, 합의 관련 양형요

소 정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함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 아동학대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학대의 정도가 중	특별가중인자
전체	4 40.0%	4 40.0%	1 10.0%	2 20.0%	3 30.0%	6 60.0%

- 11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10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0.0%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45.4% > 가중영역 27.3% = 감경영역 27.3%

● 아동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학대의 정도가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인자
전체	26 37.7%	11 15.9%	1 1.4%	3 4.3%	3 4.3%	3 4.3%	5 7.2%	7 10.1%	3 4.3%	31 44.9%	2 2.9%	43 62.3%

- 56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69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2.3%로 더 많았음

- 가중영역 55.4% > 감경영역 33.9% > 기본영역 10.7%

▣ 아동학대범죄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수정 사항 반영

- 이번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아동학대’ 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양형실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함

2) 양형인자 요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사체손괴(2, 3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b></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 (<del>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li> <li>• 사체유기(2, 3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3) 양형인자 상세 설명

- ▣ 중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와 논의가 동일한 부분은 생략함
- ▣ 범행 후 구호 후송

- ‘범행 후 구호 후송’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 살인범죄, 강간치사범죄 등에서 위 양형인자를 일반감경인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범죄 등에 준하여 정함

####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기본범죄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인바, 기존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다른 행위 태양도 포함되도록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명칭을 수정하고, 정의규정의 예시에 위 기본범죄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양형인자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협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

---

---

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불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  
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사체손괴, 사체유기

- 아동학대살해 구성요건 신설 전 적용되던 살인(아동복지법위반 경  
합)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사체손괴와의 이중경  
합범 사안으로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살인범죄에서 사체손괴를 특별가중인자로, 사체유기를 일반가중인  
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에 준하여 정함

### 다.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양형인자 수정

####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  
죄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  
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  
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상습범인 경우

- 대유형 2 유기·학대 중 가. 일반적 기준 「유형의 정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가 제외되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  
72조(상습범)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만 남기고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는 삭제함
- 대유형 2 유기·학대 중 가.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수정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

- 대유형 1 체포·감금의 서술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파란색  
표시 부분 추가)
-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경향범적 특성이 강함을 고려하고, 대유형 3 아  
동학대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과의 균형 도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 범죄를 범한 경



---

---

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이 생략되어 있었으므로,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3 아동학대에서의 것과 동일한 취지의 서술식 기준을 추가함

####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종전 ‘농아자’로 표현되어 있던 양형인자를 형법 개정애 맞추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함

## 2.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양형인자 추가 관련 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양형인자 추가 여부 요약

아동학대범죄		양형인자 기설정 여부	상습범 설정 필요	신고의무자 설정 필요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나목	형법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다목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라목	형법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마목	형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바목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사목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아목	형법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제6조) ×(제7조)	○	○
	자목	형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차목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카목	형법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제6조)	○	○

아동학대범죄		양형인자 기설정 여부	상습범 설정 필요	신고의무자 설정 필요
		x(제7조)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6조)	x	x
		○(제7조)		
하목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제6조 적용x	x	x
		○(제7조)		

▣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추가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양형인자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li> </ul>

▣ 폭력범죄, 성범죄, 공갈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인자 추가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양형인자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 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사항

### ▣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함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 ▣ 성범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범죄군(1-2 범죄군)에 해당함
- 1-2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 다. 그 밖의 정비 사항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아래 서술식 기준과 달리 기재된 것은 아래와 같이 수정함(파란색 표시 부분 추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아래 정의 규정이 없는 범죄군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에 관한 정의 규정 추가

- 양형인자 정의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 규정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아래 정의 규정이 없는

---

범죄군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관한 정의 규정 추가

● 양형인자 정의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종전 ‘농아자’로 표현되어 있는 양형인자는 형법 개정에 맞추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함

(이하 여백)

## VI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가. 대유형 3 아동학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 1) 집행유예 기준표 변경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집행유예 기준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집행유예 기준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03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증상해·치사~~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b>학대 유기·학대 등</b>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b>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b></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li>○ <del>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b>처벌불원</b></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del>상당 금액 공탁</del> <b>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b></li> </ul>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del>피고인이 고령</del></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del>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del></li> </ul>

## 2) 집행유예 참작사유 변경 부분 상세 설명

### ▣ 집행유예 기준 적용 범위

- 살인범죄의 경우 미수 외에 집행유예 기준이 없으므로,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집행유예 기준표에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라고 표시함

###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을 삭제하고, ‘처벌불원’ 을 추가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중 ‘상당 금액 공탁’ 을 삭제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을 추가



-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 ▣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화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는 표현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로 명확히 함

#### ▣ 양형인자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응

- 유형 분류 변경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 대유형 2 유기·학대 집행유예 기준에만 있던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를 대유형 3 아동학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함
- 대유형 3 아동학대의 특별가중인자인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및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를 통합하여,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로 표현하여 대유형 3 아동학대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함

#### ▣ ‘피고인이 고령’ 삭제

-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와 차등을 두어 ‘피고인이 고령’ 을 집행유예의 일

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삭제

- 가해자 대부분이 보호자인 아동학대 범죄에서 보호자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정서적 곤경을 수반하는 것은 대다수 사건에서 예상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은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제함

나.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수정 사항 요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b>금고형</b>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del>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del> <b>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 전과 ○ <b>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b>	○ <del>상당 금액 공탁</del>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 ○ <b>금고형의</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del>피고인이 고령</del>

2) 수정 사항 설명

-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을 삭제하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을 추가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중 ‘상당 금액 공탁’ 을 삭제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을 추가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 ▣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화
- ▣ ‘피고인이 고령’ 은 삭제

## 2.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상습범’ 추가 관련 사항

#### ▣ 설명

- 양형인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되므로, 이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함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양형인자 ‘상습범’ 은 ① 이미 각 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참작

---

사유 중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가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고, ②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역시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으며, ③ 상습범 자체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둔 전례가 없어, 이를 반영하지 않음

## 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사항

### ■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함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 ■ 성범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범죄군(1-2 범죄군)에 해당함
  - 1-2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②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다. 그 밖의 정비 사항

▣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화

▣ ‘피고인이 고령’ 은 삭제

(이하 여백)

---

## VIII. 수정 양형기준 의결 시기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이번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의결함
  
- 성범죄 양형기준
  - 제8기 양형위원회 잔여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2022년 상반기 예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모두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함

(이하 여백)